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마 앞 辩	높 위 함	다소 높은 위험	보통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

형)(합성 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5년 1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3월 1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제한없음)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7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 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 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 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분리과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1.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판매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 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1.31)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펀드코드: AJ978)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이 해 보 아	다소 높은 위험	보통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0%이하로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 써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수익률을 추적하여 운용하는 것 을 목표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되므로 장외시장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장외파생품상품일반위험,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미국 부동산에 주 로 투자됨에 따라 미국의 다양한 거시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 되는 기초자산관련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mark>동</mark>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장외파생상품</u>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며 Dow Jones이 산출·공표하는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수 익률을 추적하도록 장외파생상품에 100%이하 투자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 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투자신탁보수 차감전을 말함)의 변동률을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100%)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분류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담보설정 등을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를 추적하기 위하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운용목적 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부동산(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	자자가 부담하는 ,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구시미승	종류	선취 판매 수수료		지정참가 회사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비용						
투자신탁	없음	0.3000	0.0450	1.6100	0.4218	43	88	136	237	533
(X 1) 1 000[ח חרגבו			0		TITIDI 4	000010	0 = 1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 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단위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1 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종류	최초설정일	2024.02.01~2	2023.02.01~2	2022.02.01~2	2020.02.01~2	일당 이후
		025.01.31	025.01.31	025.01.31	025.01.31	이우
투자신탁	2013.07.30	9.25	2.12	-2.94	-0.50	4.71
비교지수	_	7.66	1.61	-2.85	-0.67	4.79
수익률 변동성	2013.07.30	16.51	18.01	21.31	26.16	20.03

- (주1) 비교지수 :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 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	전문
인	력

	생년		운용현황		연평균 수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mark>(해외부동산파생형)</mark>			운용
성명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용 다	운용	용역	운용	용사	경력 년수
			사기구 수(개)	#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1
박지영	1996	책임 (책임)	11	6,711	_	_	9.28	2.12	1년 10 개월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 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 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 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 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 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

		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기초자산 가격 변동위험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 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 위험
		1)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은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 래상대방과 투자신탁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는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 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
		고, 이 투자신탁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장외파생상품 기초지수의 산정이 중단되거나,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중도해지·미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
		격제공이 지연되거나, 환매요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매각이 지연되어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또는 그로 인해 이 투자신탁이 중 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투자대상 기초자산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투자대상 기초자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4)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줄이고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설정 등을 하지만 담보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증가시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ナベコロ		있습니다.
		3. 수익조건 변경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상했던 손익구조 등이 변동될 위험이 있
		습니다. 1) 기초자산의 변경,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의 가격, 기타 지급일등 장외파생상품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 의 산출이 폐지 또는 단절되는 경우
		3)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 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4)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초자산 등의 정규매매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
		5)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6)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수익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금비공여형(unfunded) 및 자금공
		여형(funded) 입니다. 자금비공여형(unfunded) 구조는 원금의 교환없이 기초지수 수익률과 조달비용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며, 자금공여형 (funded) 구조는 원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음)하고 기초지수 수익률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스 왑 스프레드 등)은 1.24% 이내 수준(연환산 비용, 2022.12.31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자금비공여형(unfunded)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달

		비용(투자신탁재산의 채권, 콜 등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부 상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인해 수 익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조기종결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장외파생상품 기초지수의 산정이 중단되는 경우 2.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또는 연장되지 않는 경우 3.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본 장외파생상품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본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여하한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경우,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이 한국 및 해외거래소에서의 상장이 폐지되어 본 장외파생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경우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 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환혜지 전략 을 반영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서 직접 환혜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경우 기초자산74의 가격변동에 의한 투자손익 등은 환율변동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일반위험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는 해외지수로 한국과 미국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전일 지수의 종가를 활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격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미국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미국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미국 부동산 등은 미국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실률, 부동산정책, 이자율 및 천재지변 등다양한 거시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 방법	• 한국거래소 위로 장중 매	
환매 수수료	없음	왕업 제)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 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
	공시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สเม	구분 집합투자기	과세의 주요내용 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과세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

	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경험 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9.9%(소득 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9.9%(소득 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9.9%(소득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번호 : 02-2	㈜ 055-5555 / 인터넷 홈페		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	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제한 없음	
효력 발생일	2025년 3월 14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AJ97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파생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거나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 요건

이 투자신탁은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유가증 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성상장지수투자신 탁이며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 :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복수의 신용평 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최근의 등급을 말한다) 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1) 한국신용평가: AA-

(2) 나이스신용평가정보: AA-

(3) 한국기업평가 : AA-

나.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 (1) S&P : A-
- (2) Moody's : A3
- (3) Fitch: A-
- 다.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 3. 법 제16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 성이 인정될 것
-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 2) 위험관리체계 : 집합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1.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방법
 - 가. 위험평가액 산출 : 「금융투자업규정」제4-54조 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매일 산출할 것
 - 나.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 평가업무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할 것
 - 2. 거래상대방 위험관리 방법
 - 가. 위험평가액 한도 :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 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나.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 다. 장외파생상품계약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3) 담보관리체계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1. 담보자산 요건 :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자 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 수 있을 것
- 나.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 라.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 마.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 바.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 2. 담보비율 : 다음 각 목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 가.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 (1) 현금: 100분의 100 이하
 -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제19조의 "금융채"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100분의 95 이하
 - (3)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u>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u>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0 이하
 - (4) (2) 및 (3)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100분의 85 이하
 - (5) 그 밖의 자산 : (1)부터 (4)까지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 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가목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 치의 비율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3. 담보자산 관리방법
 - 가.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제4호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다목 (3)의 담보자산 평가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 나.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 다. 거래상대방 부도 등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법 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 4. 담보자산 보관 및 평가기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제3호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 나.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 다.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 4) 장외파생상품 외 자산편입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3항 제1호(바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제한없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ㆍ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모집방법	파메워지 여러이에 파메워지 카그를 틀린어 무지하니다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요건

- 1. 펀드규모 :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 2. 지정참가회사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 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 3. 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 (3)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 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 4. 자산구성방법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한다.
 -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경우
 -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5. 합성상장지수펀드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 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

전성 규제를 받는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3) 법 제16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 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 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 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 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 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 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 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6. 존속기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7. 지수 등 이용계약 :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u>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u>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u>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u>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제1호, 소송 등에 관한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장폐지 요건

-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u>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u> 인 중단은 제외한다.
 - <u>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u>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u>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u>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 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5호 가목 (3)에 따른 <u>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u>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u>우</u>.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 이 없는 경우
-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u>제115조 제1항에 해당되어</u>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8.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 1)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합니다.
- (주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 3)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합성 H)	AJ97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13년 7월 30일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2015년 4월 17일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투자 KINDEX 합성-다우존스 미국 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
	탁(파생형)(H)
	⇒ 변경후 : 한국투자 KINDEX 다우존스 미국 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
	(파생형)(합성,H)]
2015년 4월 23일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투자 KINDEX 다우존스 미국 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
	(파생형)(합성,H)
	⇒ 변경후 : 한국투자 KINDEX 다우존스 미국 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
	(파생형)(합성 H)]
2022년 10월 13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2022년 10월 17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 → 신한아이타스)
2023년 6월 29일	투자대상자산 추가(파생결합증권)
2024년 9월 25일	투자신탁명칭 변경
	[변경전 : 한국투자 ACE 다우존스 미국 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
	형)(합성 H)
	⇒ 변경후 : 한국투자 ACE 미국부동산리츠 부동산 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
	형)(합성 H)]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5.1.31 기준]

AULA			운용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부동산파생형)			00HH	
성명	생년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용 단 다	운왕	용 역	운용	용사	운용경력 년수
			사기구 수(개)	#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지영	1996	책임	11	6,711	_	_	9.28	2.12	1년 10개월

<이력>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학사

- 2019.07 ~ 2022.07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2022.08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AUIH	운용	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부동산파생형)		007474				
성명	생년 (년)	직위	집합투 자기구	용 모	운용	용역	운동	용사	운용경력 년수
			수(개)	ㅠ포 (억원)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_	_	1	_	1	_	_	_	_	

<이력>

_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 다
-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 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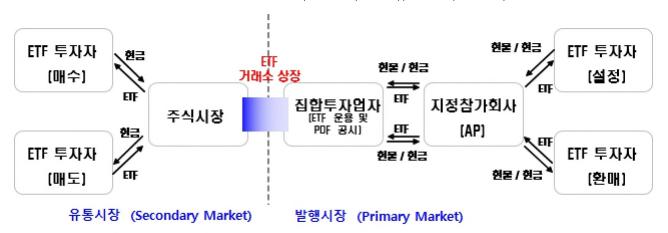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지영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_	-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형성하	2013년 07월 30일 ~ 2013년 11월 27일		
김홍주	2013년 11월 28일 ~ 2015년 06월 11일		
이종훈	2015년 06월 12일 ~ 2020년 09월 16일		
김서영	2020년 09월 17일 ~ 2022년 11월 23일		
이종훈	2022년 11월 24일 ~ 2024년 03월 27일		
박지영	2024년 03월 28일 ~ 현재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부동산(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장외파생상품</u>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Dow Jones이 산출·공표하는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장외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투자신 탁보수 차감전을 말함)의 변동률을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0%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가.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나. 채권·부동산·통화나 채권·부동산·통화의 가격,이자율,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부동산·통화나 채권·부동산·통화의 가격,이자율,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 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u>취득시 신용</u> 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증권	
파생결합증권	10%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 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다만, 법 제2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u>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 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 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8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제3호 가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 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 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 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	
투자제한	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	
	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신탁계약서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	
	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	
투자제한	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	
	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최초설정일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부터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	1 개월간
	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	최초설정일
	권에 투자하는 행위. <u>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u>	부터
	<u>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u>	1 개월간
	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	7 7 1 2 2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ú.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_,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최초설정일
투자제한	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터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1 개월간
	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역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스타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하로 유지해	
	아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	
	<u>당하는 자</u> 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_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

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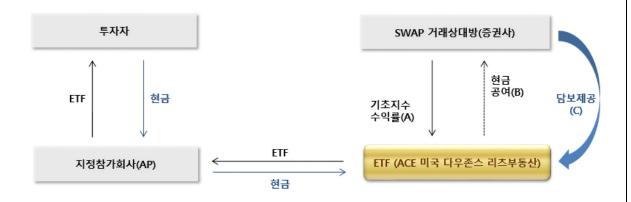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담보설정 등을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를 추적하기 위하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 운용목적 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 (합성ETF)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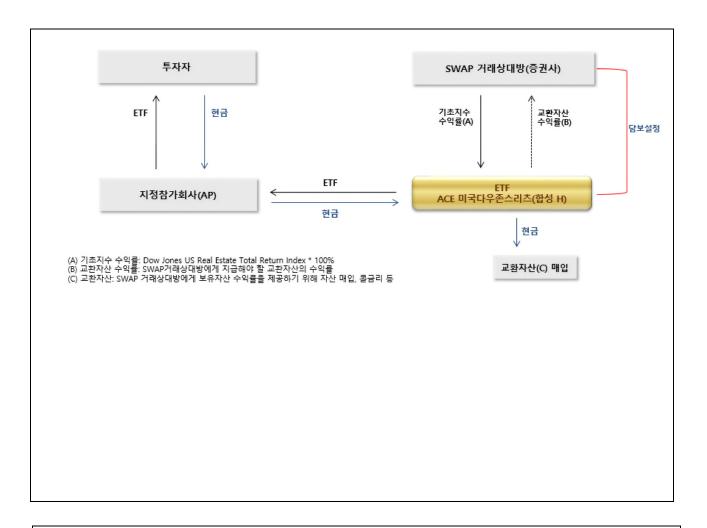
- 1) 개념: 합성ETF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기존 ETF(실물 ETF)와 달리 스왑 (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
- 2) 특징: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지수추적을 위한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ETF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 위험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즉, ETF 운용사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결제 불이행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장외파생상품 주요내용

- 1) 거래상대방 : <u>KB증권[신용등급 : AA+]</u>, 대신증권[신용등급: AA-], NH투자증권[신용등급: AA+], 키움증권[신용평가등급: AA-] (작성기준일: 2020.12.30)
- 2) 기초지수: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3) 수익구조 : <u>기초지수의 일간수익률에 연동</u>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KB증권, 대신 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과 스왑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금공여형 스왑(Funded Swap) 계약:** 설정원금을 거래상대방에게 공여 후 원금과 약속된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방식, 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음



- 자금비공여형 스왑(Unfunded Swap) 계약: 원금의 교환 없이 기초지수 수익률과 교환자산 수익률(Swap거래상대방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채권, 콜 등의 자산 매입)을 교환하는 방식



※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주요내용

ㅇ 구성자산 :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REITs와 부동산관련 회사 주식

ㅇ 지수산출기관 : Dow Jones

ㅇ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00년 2월 14일, 187.47

ㅇ 정기변경: 매분기 (3월, 6월, 9월, 12월)

ㅇ 조회방법 :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홈페이지 (http://www.kindexetf.com/)

ㅇ 지수산출방식

- 주요 미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Dow Jones U.S. Index를 구성.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는 Dow Jones U.S. Index의 하위 섹터 인덱스
- 시가총액 순으로 하위 1%, 회전율 기준 하위 0.01%의 종목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95%로 유니버스 구성
- 유니버스를 하부 섹터로 분류 후에 유동 시가총액으로 가중치 부여
- Industry > Supersectors > Sectors > Subsectors 레벨순으로 각각 10개, 19개, 41개, 114개로 분류 되어있음

Industry	Supersectors	Sectors	Subsectors
		Real Estate Investment	Real Estate Holding
Financials Real Estate		& Development	
		& Services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al Estate Services, Industrial &
			Office REITs, Retail REITs,
			Residential Reits, Diversified
			Reits, Specialty Reits, Mortgage
			Reits, Hotel & Lodging Reits

- ① Real Estate Investment & Services : 부동산에 직·간접 투자회사 및 부동산회사에 대한 서비스 (브로커, 기업자문 등 포함) 제공 회사
- ②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 및 상장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포함
- 분기별 정기변경 이외에도 상장폐지, 파산, 인수, 합병 등의 예외적인 이벤트 발생시 지수 재구성 및 비중 조정
- Wall Street Journal 발간일에 발표
- US trading hours 동안 매 5초마다 산출
- ※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이하 "본 지수")는 S&P Dow Jones Indices LLC 또는 관계사 ("SPDJI") 의 상품이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Standard & Poor's 와 S&P는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S&P")의 등록상표입니다. Dow Jon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Dow Jones")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SPDJI에 사용허가 되었으며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이하 "본 상품")에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본 상품은 SPDJI, Dow Jones, S&P, 그 관계사가 스폰서하거나, 추천하거나, 판매하거나 프로 모션하는 것이 아닙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지수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 자의 적부 또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추적하는 능력과 관련하여 본 상품의 투자자 또 는 일반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아니합니다. S&P Dow Jones Indices와 본 지수 사용자와의 유일한 관계는 S&P Dow Jones Indices의 지수, 특정 등 록상표와 상호를 라이선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지수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또는 본 상품과 무 관하게 S&P Dow Jones Indices에 의해 결정, 구성 그리고 계산됩니다. S&P Dow Jones Indices 는 본 지수를 결정, 구성, 계산함에 있어 한국투자신탁운용 또는 본 상품의 투자자의 필요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본 상품의 발 행, 판매의 시기 또는 본 상품의 환매, 상환 등의 상황에서 본 상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 의 결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 는 본 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지수를 기초로 하는 투자상품들이 정확하게 지수의 성과를 추종할 것이라고 또는 양의 투자수 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 LLC는 투자자문 회사가 아 닙니다. 지수에 증권을 편입하는 것은 해당 증권의 매수, 매도, 보유에 대한 S&P Dow Jones Indices의 추천이 아니며 이것이 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본 지수 또는 배포된 자료,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통(전자기기를 통한 의사소통 포함)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적절성 또는 완벽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어떠한 피해나 오류, 누락 또는 지연에 관한 책임에 종속되지 않습

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특정 목적 또는 사용에의 시장성이나 적합성 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나 본 상품의 투자자, 본 지수 또는 배포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얻을 결과에 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에 더하여, S&P Dow Jones Indices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손실, 거래손실, 시간 또는 영업권의 손실을 포함한 간접적, 특별적, 우발적, 징벌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는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무과실책임 등을 통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공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P Dow Jones Indices와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이에 체결된 어떠한 협정 또는 협의에는 S&P Dow Jones Indices의 라이선스 보유자 외에 다른 제3의 수혜자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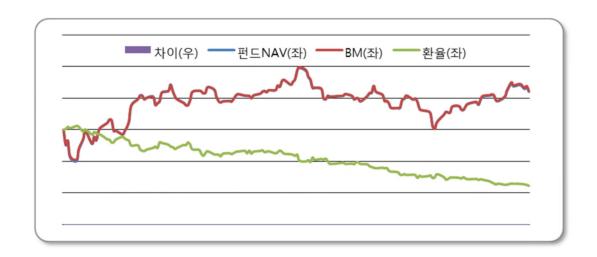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담보설정 등을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예정입니다.

(3) 환위험 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환혜지 전략을 반영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서 직접 환혜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투자손익 등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환혜지수단의 부재, 투자수익 발생, 추가설정·해지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혜지 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혜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부분환헤지에 따른 추적오차 예시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환헷지를 주기적 (예시: 3개월)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즉 스왑에 투자한 원본금액에 대하여 100% 환혜지는 가능하지만, 원금에서 발생하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환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정산주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성과가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기초지수 대비 추적오차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지수의 수익률 변동성이 크거나 환율의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추적오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1) 원화 강세 구간인 경우



- (주 1)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펀드 NAV, BM, 환율을 100 으로 환산하였으며, 해당 기간 추적오차는 펀드 NAV 와 BM 의 누적 성과차이(우측) 표시함
 - 2) 원화 약세 구간인 경우



- (주 1)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펀드 NAV, BM, 환율을 100 으로 환산하였으며, 해당 기간 추적오차는 펀드 NAV 와 BM 의 누적 성과차이(우측) 표시함
 - ※ 환혜지: 환혜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 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혜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혜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됩니다.
 - * 환해지 비용: 이 투자신탁은 환해지를 수행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해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은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비용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혜지 비용을 기재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의 환혜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혜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100%)]

■ 비교지수 지정 사유

- O 이 투자신탁은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해당 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일반적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매입·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ㅇ 현금으로 설정 및 해지를 합니다.
- 설정 및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ㅇ 매입에 의한 수익증권 및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 ㅇ 설정청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보호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각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kim.koreainvestment.com/investment/gongsiList.do?submenu=3) 에 공시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금액
-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

- 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VaR)
-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에 관한 지표
- (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상기 3.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2. 제 1 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은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기초지수 구성내역 및 비중, 적격담보자산 및 담보요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및 <u>순자본비율(NCR)</u>등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위험	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미국 REITs 및 부동산관련 회사의 주식
	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혜지 전
위험	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환혜지 전략을 반영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서 직접 환혜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투자손익 등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및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
	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다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유동성 제약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
행	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
위험	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변동위험	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
	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
	로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
험	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
	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
투자위험	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
	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
및 RP매입	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
위험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
	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론)및 예금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잔액 위험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
	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
	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
위험	방의 시스템적인 오류 및 오퍼레이션 오류로 인해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 타이밍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운용을 저해하여 투자신탁 이익의 최대화 또
	는 손실의 최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위험	1. 기초자산 가격 변동위험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기	
	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 위험	
	1)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은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	
	과 투자신탁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는 거래상대방 회사	
	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회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투자신탁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	
	습니다.	
	2) 또한, 장외파생상품 기초지수의 산정이 중단되거나,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중도해	
	지·미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제공이 지연	
	되거나, 환매요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매각이 지연되어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또는 그로 인해 이 투자신탁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투자대상 기초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	
	자대상 기초자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줄이고자 거래상대방으	
	로부터 담보설정 등을 하지만 담보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거	
	래상대방 위험을 증가시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3. 수익조건 변경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상했던 손익구조 등이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1) 기초자산의 변경,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의 가격, 기타 지급일 등 장	
	외파생상품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의 산출	
	이 폐지 또는 단절되는 경우	
	3)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	
	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4)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격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초자산 등의 정규매매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	

- 5)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 6)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수익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이 투자신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금비공여형(unfunded) 및 자금공여형 (funded) 입니다. 자금비공여형(unfunded) 구조는 원금의 교환없이 기초지수 수익률과 조달비용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며, 자금공여형(funded) 구조는 원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음)하고 기초지수 수익률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지수 수익률을 수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스왑 스프레드 등)은 1.24% 이내 수준(연환산 비용, 2022.12.31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또한, 자금비공여형(unfunded)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달비용(투자신탁재산의 채권, 콜 등 매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부 상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인해 수익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조기종결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 장외파생상품 기초지수의 산정이 중단되는 경우
- 2.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또는 연장되지 않는 경우
- 3.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본 장외파생상품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본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이 한국 및 해외거래소에서의 상장이폐지되어 본 장외파생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거래상대방이임의로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은 해당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과 투자신탁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는 거래상대방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부도처리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 회사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이 투자신탁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중도해지·미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으로 교체·변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따른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합성상장지수투자신탁의 투자금 전액이	
	손실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은 합성상장지수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	
관련	래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본항에서는 "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위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됩니다.	
	-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	
	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규정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	
	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u>순자본비율</u> 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	
	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	
	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	
	는 계약이 없는 경우	
지수산출방식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	
대폭변경 또는	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중단위험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 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전부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기	
	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ETF	이 투자신탁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한 합성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투자위험	서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과 위험관리 및 담보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투자 	
	신탁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장외파생계약에 따른 복제비용, 헷징비용 및 각종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반위험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	
	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 	
기숫지사 교전	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관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미국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미국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미국 부동산 등은 미국경제	

	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실률, 부동산정책, 이자율 및 천재지변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
	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DF 내역에 지	이 투자신탁은 현금설정방식으로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기초자산인 Dow Jones
수구성종목 정	US Real Estate Index를 추종합니다. 따라서 현물설정방식의 상장지수투자신탁과는 달
보 일부 제공위	리 PDF내역에 투자대상자산이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초지수 구성종목 중 최
함	소 상위 30개 종목과 지수내 비중을 참고사항으로 제공합니다.
대체자산(피투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관리를 위해 투자신탁재산의 10% 내외의 수
자ETF) 편입으	で 무지근국은 용되되용용임 게임용기국 근데를 게해 무지근국제근의 10% 데되의 1 준으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ETF")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
로 인한 추적오	부 피투자ETF의 경우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의 부분 복제 등에 따른 지수 추적 괴리
고 한번 푸리고 자 위험	발생. 피투자ETF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거래소 개장시간과 피투자ETF의 거래소 개
N 716	장시간 불일치 및 시장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한 피투자ETF의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강시된 물물지 및 제공 무립 표된 용으로 한편 피구지니다의 문자전기자의 제공기학 간의 괴리 발생,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하여
	전의 피디 필정, 구자전력모두, 취업배배구구요 중 전단 비용의 제물 중으로 한하여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ETF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추적오차가 확
저이 기즈 기계	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시타이 투자하는 자이피색사표 기계사대바이철 편기시 저용다는 자이피색사표
전일 기준 거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위험 평가시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상대방 위험평	의 가치는 전일 기초지수 변동률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로 인해 가격괴리율이 발생할
가액 산출위험	수 있습니다.
괴리율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인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는 해외지수로 한국과 미국
	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전일 지수의 종가를 활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격괴리율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REITs와 부동산관련 회사 주식이라는 한정된
집중위험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
다니기러이티	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관련위험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스왑)을 투자함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거래상대방 위험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
	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 등이 설정이 될 경우 담보 등의 가치만큼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 거래
	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
	금액 - 담보 등의 가치). 따라서 담보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거래
HEU	상대방 위험을 증가시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공실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
투자 위험	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요소들로부터 그 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1) 시간이 흐름에 따른 부동산 노후화

	2) 투자대상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 해당 지역의 인구 통계
	학 및 지정학적 변화 등 (인구의 증가・감소, 도시화 정도, 기호 변화 등)
부동산투자회사	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종목 중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
관련 위험	한 양도가능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 일반적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증
	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
	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
	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투자신탁의 가
	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유동성 위험	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것)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위험을 갖습니
	다. 즉, 주식시장 내의 다른 대형주 주식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
	니다. 또한 소형주가 그러하듯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며 이는 주가의 급
	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추적오차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
발생위험	나, 투자신탁 보수나 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
	적대상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
	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
	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위험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
	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
	다.
추적대상	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추적대상지수
지수위험	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타 지수제공기관이나 당사에서 산출한 추적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변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적오
	차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가격위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
	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금성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상장된 이후
제약위험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
	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
	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1. 기초자산 가격 변동위험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 위험

발행회사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 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익조건 변경 위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상했던 손익구조 등이 변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 1) 기초자산의 변경 또는 행사가격, 기준가격 결정일(만기일 등),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초자산의 가격, 기타 지급일 등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2) 기초자산의 산출방식 또는 구성종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거나 기초자산의 산출이 폐지 또는 단절되는 경우
- 3)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 4)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격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초자산 등의 정규매매마감시각 이전에 거래를 마감 하여 당해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
 - 5)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거래중지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 6)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수익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조기종결 위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가 본 파생결합증권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또는 본 파생결합 증권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산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이 한국거래소에서의 상장이 폐지되어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발행회사가 임의로 조기상환을 할 경우에 이 투자신탁에서 추구하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분배금 지급 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으로 분배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투자신탁의 특 성상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이 실 제 보유한 종목에서 발행한 분배 재원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매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배금은 분배 재원 상황 등 기타 사유 에 따라 매월 지급방식에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지급과는 별개로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거래중지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위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
	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
	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
	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위험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
오류 위험	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
규제 등 제도적	칠 수 있습니다.
위험	
운용프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
	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져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
	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져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져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글 처럼이 쓰십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위험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	발생할 수 있습니다.
	EUE 1 M079.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u>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u> 변동성이 45.89%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의 가격변동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며, 해당 장외파생상품은 미국 REITs 및 부동산관련 회사의 주식에 연계하여 해당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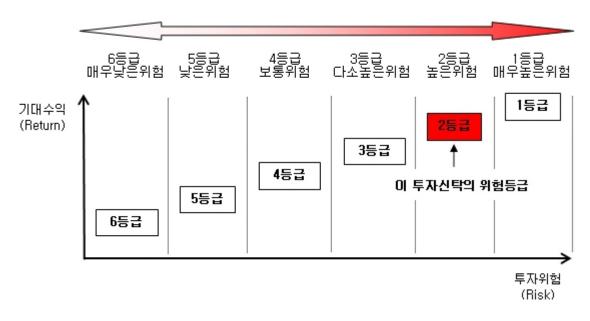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1등급	1등급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5단계 → 6단계)
2017.01.11	1등급	157	설정기간 3년 경과 하였으나, 투자자보호 필요성
2017.01.11	」 「10	1등급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유지
2020.02.25	1등급	っニコ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
2020.02.25	160	3등급	성(연환산)이 10%초과 15%이하
2021.03.18	3등급	1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
2021.03.10	2021.03.18 3등급		성(연환산)이 25%초과
2024 02 07	1 ⊏ ⊃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2024.03.07	1등급		변동성(연환산)이 15%초과 25%이하
		2등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표준편차 → VaR)
2025.03.14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에 따른 수익률변동성
			50%이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u> </u>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다만, 상기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 ㅇ 설정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ㅇ 매입에 의한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 ㅇ 설정청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설정단위 (Creation Unit)

-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수익자 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 (40,000좌, 6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ㅇ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3) 정산금액 등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 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말

합니다.

- O 정산일 : 투자자는 상기 정산금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O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설정요청일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수익증권의 설정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 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3시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 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 (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

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 야 합니다.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탁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설정일 (T+2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u>전자등록기관</u>은 설정 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 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ㅇ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입고합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일자별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일자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		설정자금 납입
		정청구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기준가격 적
				용일)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		인수도명세 확인
		정청구		및 수익자통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설정청구내역 확인		수익증권 발행(전
	공고	및 승인		자등록기관을 통한
	(한국거래소등)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등의 납부
				확인

(주 1)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설정을 청구하고,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을 상장후 투자자와 지정참가회 사가 인수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간접설정)에는 위의 표와는 달리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을 T+2일에 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간접설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3 영업일 등 별도로 지정된 날짜에 수익증권을 받게 됩니다.

나. 환매

※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조근하에 보기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발생하지 않음)
		0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 ㅇ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ㅇ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30분 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 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3시30분 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 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 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⑪ 제10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 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O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 환매청구일 (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ㅇ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환매일 (T+2일)

- ㅇ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일자별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자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
		환매청구		산 수령(기준가격 적용일)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인수도명세 확정 및 승인,
		환매청구		수익자 통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	환매청구내역		투자신탁 일부해지
	내역 공고	확인 및 승인		(<u>전자등록기관</u> 을 통한 말
	(한국거래소			소의 전자등록)
	등)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취합 및 집합투		통보
		자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내역 확인

(4)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시 자산의 이체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규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금전 납입 방식의 수익증권 설정·해지의 경우 한국은행망을 통한 대금결제를 사용하며 지준일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직접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사저바버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
산정방법	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시저조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주기	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지정참가회사·한국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 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
	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
	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
	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
	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
	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
상장주식	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
	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비상장 지분증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채무증권등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NIT OLO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
파생결합증권	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ДОЕВОС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04111000	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성기파성성급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실물자산등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
	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 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
	ਰੇ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
	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1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시
환매수수료	_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000	투자신탁의
지정참가회사보수	0.0450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업자보수	0.0250	OH 1, 4, 7,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300	10 월의
총보수	0.3000	마지막일까지
기타 비용	0.121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4218	_
(동종유형총보수·비용)	1.6100	_
증권 거래비용	0.0114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1.01 ~ 2024.12.31] *기타비용 예시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직전 회계연도 기타비용 금액 : 16,363,953 원]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1.01 ~ 2024.12.31]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 금액 : 1,536,838 원]
-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7 8	투자기간					
구 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88	136	237	53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이익 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등의 지급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u>전자등록기관</u>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

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 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 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 제234조 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 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 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부터 <u>2023년</u>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
	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1.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
대상펀드	사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1조의4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 따
	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
	동산투자회사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세제혜택	제14조 제2항 <u>및 제87조의4에 따른 <mark>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mark>에</u>
All All Oil —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제혜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
방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판매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감면세액	되는 날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추징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

니함(특별해지)

-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 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판 매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2 기 (2024.01.01 ~ 202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1기 (2023.01.01 ~ 2023.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0기 (2022.01.01 ~ 2022.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재	무상태표	
항 목	제 12기	제 11기	제 10기
항 목	2024.12.31	2023.12.31	2022.12.31
운용자산	10,513,038,083	11,882,084,970	13,431,449,344
증권	6,513,125,000	7,911,550,000	9,106,996,84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999,913,083	3,970,534,970	4,324,452,50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37,546,880	136,167,994	74,975,038
자산총계	10,650,584,963	12,018,252,964	13,506,424,38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7,567,889	26,534,108	43,702,083
부채총계	27,567,889	26,534,108	43,702,083
원본	6,000,000,000	9,000,000,000	9,000,000,000
수익조정금	-210,551,446	-210,551,446	
이익잉여금	4,833,568,520	2,991,718,856	2,429,737,563
자본총계	10,623,017,074	11,991,718,856	13,462,722,299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2기	제 11기	제 10기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2022.01.01 ~ 2022.12.31)						
운용수익	3,123,538,365	3,741,506,195	-3,583,480,073						
이자수익	1,230,994,363	353,558,137	305,995,893						
배당수익	122,500,000	119,000,000	54,950,000						
매매/평가차익(손)	1,770,044,002	3,268,948,058	-3,944,425,96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7,805,351	38,333,583	59,873,842						
관련회사 보수	36,268,513	36,637,875	56,606,077						
매매수수료	1,536,838	1,695,708	3,267,765						
기타비용	20,393,674	2,574,678,253	2,393,982,141						
당기순이익	3,065,339,340	1,128,494,359	-6,037,336,05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합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12 기 0 원, 11 기 0 원, 10 기 0 원 발생)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12 기 0 원, 11 기 0 원, 10 기 0 원 발생)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주,백만원,%]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매매회전율	동종유형 평균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식의 평균가액(B)	(A/B)	매매회전율
F	0	0	0	0	0	0.00	23.74

-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당기		전기			
구 분	ווכ גר	거래	비용	ווכ גר	거래비용		
구 분	거래 크애(^)	⊐ o⊪(D)	그래(2) 거래비용 그래(3)		⊐ 011 (D)	거래비용	
	금액(A)	금액(B)	비율(B/A)	금액(A)	금액(B)	비율(B/A)	
주식	-	-	-	-	-	_	
주식 이외의		_			_	_	
증권(채권 등)		ı	ı	-	_	_	
장내파생상품	-	_	1	-	_	_	
장외파생상품	54,302	_	-	54,107	_	_	
합 계	54,302	-	_	54,107	_	_	

-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 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12기 (20)24.12.31) 애	제11기 (20 금)23.12.31) 애	제10기 (20 금)22.12.31) 액
	<u></u>	0	0	0 0	0	0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9,913,083	3,999,913,083	170,534,970	3,970,534,970	524,452,502	4,324,452,502
2. 예치금 3. 증거금	0 3,800,000,000	0.000.000.000	0 3,800,000,000	4 400 000 000	0 3,800,000,000	5 000 000 00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000,000,000	3,000,000,000	4,400,000,000 0	4,400,000,000	5,600,000,000 0	5,6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 지분증권	0	3,513,125,000	0	3,511,550,000	0	3,506,996,842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0 3,513,125,000 0		0 3,511,550,000 0		0 3,505,075,000 1,921,842	
파생상품 1. 파생상품	0	0	0	0	1,321,042	0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0	0	0	0	0	0
2. 토지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0	0	0	0	0	0
2. 전세권 기타자산	0	137,546,880	0	136,167,994	0	74,975,038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0		0 0		0 0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483,880 122,500,000 13,563,000		3,550,994 119,000,000 13,617,000		13,085,038 54,950,000 6,940,000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0 0	
자 산 총 계		10,650,584,963		12,018,252,964		13,506,424,382
부 채 운용부채 1. 파생상품	0	0	0	0	0	0
2. 환매조권부채권매도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27,567,889	0	26,534,108	0	43,702,083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0 0 27,510,561		0 0 26,522,665		0 0 43,702,09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27,510,301 0 57,328		20,322,003 0 11,443		45,702,090 0 -7	
부 채 총 계 자 본		27,567,889 0		26,534,108 0		43,702,083 0
1. 원본 2. 이월잉여금	6,000,000,000 4,623,017,074		9,000,000,000 2,991,718,856		9,000,000,000 4,462,722,299	
(발행좌수 당 기: 120,000 좌 전기: 180,000 좌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4,833,568,520 -210,551,446		2,991,718,856 0		2,429,737,563 2,032,984,736
전전기: 180,000 ^좌	1 1400	210,001,440				2,002,004,700
(기준가격 당 기: 81,301.83 원						
전기: 81,051.57 원 전전기: 75,550.65 ^원						
)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623,017,074 10,650,584,963		11,991,718,856 12,018,252,964		13,462,722,299 13,506,424,382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271.621
과 목	제12기 (2024.01.			01 ~ 2023.12.31)		
ы -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3,123,538,365		3,741,506,195		-3,583,480,073
1. 투자수익		1,353,494,363		472,558,137		360,945,893
1. 이 자 수 익	1,230,994,363		353,558,137	, , ,	305,995,893	, ,
2. 배당금 수익	122,500,000		119,000,000		54,950,00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504,992,715		4,798,925,879		1,273,795,09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771,350		6,475,000		19,388,195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3,503,142,333		4,790,852,417		1,254,335,075	
6. 외환거래/평가차익	79,032		1,598,462		71,82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734,948,713		1,529,977,821		5,218,221,056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196,350		0		146,57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1,732,368,877		1,527,969,574		5,216,854,580	
6. 외환거래/평가차손	2,312,903		1,951,277		1,168,702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70,583		56,970		51,204	
운 용 비 용		58,199,025		2,613,011,836		2,453,855,983
1. 운용수수료	26,865,839		27,139,361		41,930,590	
2. 판매수수료	6,044,606		6,106,059		9,434,104	
3. 수탁수수료	3,358,068		3,392,455		5,241,383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1,536,838		1,695,708		3,267,765	
6. 기 타 비 용	20,393,674		2,574,678,253		2,393,982,141	
당기순(손실)이익		3,065,339,340		1,128,494,359		-6,037,336,056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25,544,495		6,269,413		-33,540,756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억원]

							- / , , , ,	
	기간초 잔고		설정(<u>회계기</u> 발행)	l간 중 환	OH	기간말 잔고	
기 간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1.01 ~ 2024.12.31	0	146	0	0	0	51	0	98
2023.01.01 ~ 2023.12.31	0	136	0	0	0	0	0	146
2022.01.01 ~ 2022.12.31	0	296	0	0	0	85	0	136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 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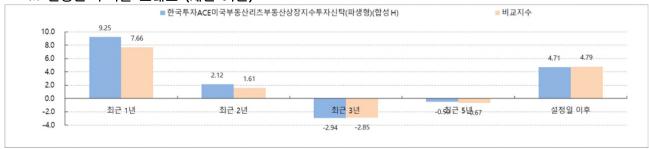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기 간	2024.02.01~2	2023.02.01~2	2022.02.01~2	2020.02.01~2	2013.07.30~2
	025.01.31	025.01.31	025.01.31	025.01.31	025.01.31
투자신탁	9.25	2.12	-2.94	-0.50	4.71
비교지수	7.66	1.61	-2.85	-0.67	4.79
수익률 변동성	16.51	18.01	21.31	26.16	20.03

- (주 1) 비교지수 :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100%)]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 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 간	2024.02.01~2	2023.02.01~2	2022.02.01~2	2021.02.01~2	2020.02.01~2
	025.01.31	024.01.31	023.01.31	022.01.31	021.01.31
투자신탁	9.28	-4.56	-12.33	19.14	-10.47
비교지수	7.68	-4.12	-11.19	17.71	-10.39

- (주 1) 비교지수 :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 × 100%)]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 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 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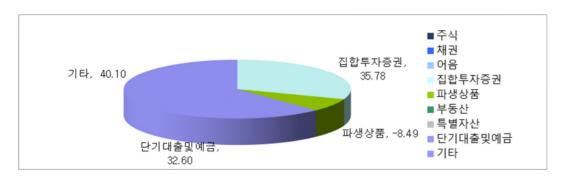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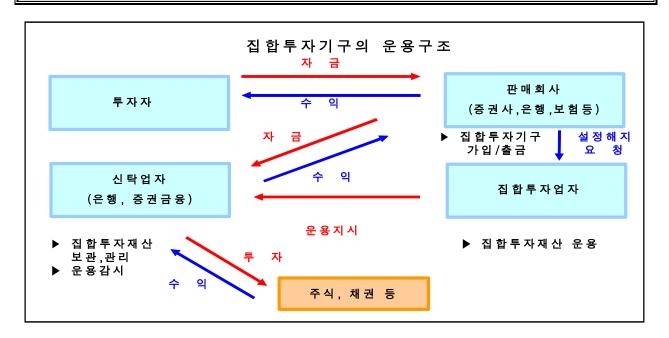
[2024.12.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		증	권		파생	상품		특별자산		단기		
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 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0	0	0	35	0	-8	0	0	0	32	39	98
KRW	(0.00)	(0.00)	(0.00)	(35.79)	(0.00)	- (8.49)	(0.00)	(0.00)	(0.00)	(32.60)	(40.10)	(100.00)
USD	0	0	0	0	0	0	0	0	0	0	0	0
03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100.00)
	0	0	0	35	0	-8	0	0	0	32	39	98
합계	(0.00)	(0.00)	(0.00)	(35.78)	(0.00)	- (8.49)	(0.00)	(0.00)	(0.00)	(32.60)	(40.10)	(100.00)

-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 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주 5)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구오 및 한탁지	(대표전화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회사 연혁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정사 진숙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19 : 한국투자증권 편입
	- 2022.07.29 :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본금	660.5 억원
주요주주 현황	한국투자증권(100%)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 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2.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4기 (2023.12.31)	제23기 (2022.12.31.)	계정과목	제24기 (2023.1.1.~ 2023.12.31.)	제23기 (2022.1.1.~ 2022.12.31.)	
현금및예치금	44,193	110,805	영업수익	110,985	137,094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8,542	10,277	영업비용	80,500	86,816	
기타포괄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지산	2,020	2,152	영업이익	30,485	50,278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91,631	104,005	영업외수익	12,138	5,573	
대출채권및수취채권	955	945	영업외비용	386	14,024	
유형자산	4,176	5,549	법인세차감전	42,237	41,827	
기타자산	88,381	33,544	법인세비용	9,775	10,740	

자산총계	279,898	267,277	당기순이익	32,462	31,087
예수부채	37,580	50,403			
기타부채	26,748	33,530			
부채총계	64,328	83,933			
자본금	66,050	66,050			
자본잉여금	10,735	10,7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9	814			
이익잉여금	138,206	105,745			
자본총계	215,570	183,344			

라. 운용자산 규모

[2025.1.31 현재 / 단위:억]

집합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	혼합자산	단기	
투자				E TI			및부동	산및특	및혼합자	금융	총 계
기구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	재간접형	파생형	산파생	별자산	소드립시 산파생	(MMF)	0 /11
종류				계약형			긴파이	파생	선파경	(IVIIVII-)	
수탁고	126,044	138,603	18,032	_	72,124	23,588	63	7,292	45,759	45,609	477,11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구오 및 인탁지	(연락처 : 1599-1111, www.kebhana.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 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 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1)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10월 16일까지

:국예탁결제원

조사 미 어린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051-519-1500, www.ksd.or.kr)

(2) 2022년 10월 17일부터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여의도동 23-9)
구도 못 한탁지	(연락처 : 02-2180-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 및 연락처	율곡로 75	구 국제금융로6길	구 국회대로 70길	마곡중앙2로 61
	(02-2251-1300,	38	19	(02-721-5300,

	www.koreaap.com)	(02-3215-1400,	(02-398-3900,	www.fnpricing.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 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 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 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 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 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u>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u>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 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 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 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 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 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 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 시하거나 집행한 자
 -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 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u>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u>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정리이행 계획, 정리실적을 업무보고서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 5%이하인 경우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209조 제1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 정 제7-8조 제3호의2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 는 사항
 -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 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u>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u> 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 역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 역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 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u>지체 없이</u> 공시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u>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u>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u>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u>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u>주권상장법인으로</u> <u>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u>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u>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u> 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u>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u> 사유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각의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kim.koreainvestment.com/investment/gongsiList.do?submenu=3) 에 공시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관한 지표	산정・작성 방법	공시시기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	파생상품 거래
	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	후 그 다음 날
	54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	까지 공시
	금액의 총액을 기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
시점의 손익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후 그 다음 날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	까지 공시
	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	
	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	매일 공시
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		
동(주1)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포지션의 시장가	매일 공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	치 ×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 편차의 배수 × 포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보유기간 으로 산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	정	
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VaR)(주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위험에 관한 지표
--	--	-----------

- (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 2. 제 1 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기대의 중류	자신의 중류	기대급력
_	-	_	-	_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_	-	-	_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1. 기본원칙
관련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
	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1. 기본원칙

관련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원]

투자목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_	-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 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 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 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 (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